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8일, 서영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2.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2.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가 어렵
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

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현실상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용윤리위원회가 높은 비용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비용을 지원하는 단기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공용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전문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용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로써 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14조제7항·제8항, 제20조의2 및 제43조제3항제3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세일)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

원회”)를 설치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공용윤리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공용윤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¹⁾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개정안은 공용윤리위원회가 법 제14조제2항²⁾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법 제14조제3항³⁾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 있어 지정 해제 근거를 신설하여, 법적 미비를 해소하고 공용윤리위원회를 보다 적절히 관리하며 공용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전문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서는, 개정안은 전문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목적으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해야 할 업무를 원활히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4조제2항의 업무는 현행법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는 업무임. 따라서 전문공용윤리위원회와 공용윤리위

1) 13개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가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되어 183개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함 (2024년 기준).

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②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2. 제19조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
3.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상담
4.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법조계·윤리학회·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원회의 기능 및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가 보다 차별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를 고의·과실의 구분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⁴⁾ 하고 있음. 개정안은 기록의 작성과 환자 및 가족의 의사 확인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⁵⁾함으로써, 과실에 의한 경우를 나누어 제재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은 과태료 금액을 2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등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또는 호스피스 등 업무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명령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⁶⁾하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 이하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동법 벌칙 시행(2018. 2. 4.) 이후 처벌 사례 없음.

5) 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행정형벌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는 것이므로 현행 벌칙규정은 '고의'로 허위기록을 작성한 경우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여, 개정안은 현행 벌칙규정과 별개로 '과실'로 인한 허위기록에 대해 완화된 제재로서 교육명령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적절

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보고·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또는 호스피스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조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